

도시환경정비(서린)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0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2.

제출자 : 종로구청장

1. 건명 : 도시환경정비(서린)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

2. 상정사유

1973.9.6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결정되어 정비사업시행으로 확보된 서린주차장 부지에 서울을 느낄 수 있고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시모형의 전시 등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유무형의 형태로 보여 도시계획 및 도시문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「서울 도시건축관」(가칭) 건립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3. 주요요지

가. 대상지

- 위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일대
- 시행면적 : 32,938㎡ (대지 : 27,015.1㎡, 공공용지 : 5,922.9㎡)

나. 도시계획사항

- 일반상업지역/중심지미관지구/도시환경정비구역

4. 변경입안내용

- 사업의 명칭 : 도시환경정비(서린)구역 변경지정
- 시행 구역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일대
- 정비구역의 위치·면적 및 서린공원 등의 기타시설은 변경사항 없음
-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

구분	시설명	위치	정비면적(㎡)	비고
기정	주차장	종로구 서린동 63일대	1,056	
변경	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	종로구 서린동 63일대	1,056	면적변경 없는 용도변경

○ 공고 및 공람

- 건명 : 도시환경정비(서린)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(종로구공고제2004-466호)
- 공람 기간 : 2004. 11. 11 ~ 2004. 11. 24(14일)
- 공고 방법 : 공보(시보) 및 구 홈페이지
- 공람 장소 :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- 제출된의견 : 제출된 의견 없음